

공업소유권(특허, 실용) 개발 지원

朴 性 浩 / 商工部 精密機械課 係長

1. 지원 배경

● 60~70년대 우리 경제는 자원, 자본의 빈곤 등 대내적인 악조건을 극복하기 위한 차관 도입과 수출 Drive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왔고 이러한 경제 조류 속에서 기술적 기반이 거의 없었던 분야, 특히 제조업의 산업구조는 그 종 기술요구도가 낮고 투자회임이 짧은 부품수입 조립 생산 형식으로 특징되어 왔다.

● 이는 당초에 국가가 목표했던 국민총생산량의 증가, 고용확대측면 등에서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으나, 내부적으로는 부품수입의 유발, 기술(설계, 생산, 검사, A/S)의 해외의존경향 등 국가의 전반적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몇 가지 부정적 요소가 나타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86년부터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류,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는데 장기저리의 정책자금을 융자하여 지원을 시작했으며 병행하여 산업 응용도가 높고 과급효과가 큰 공통기술에 대하여는 정부가 사업규모의 일정비율을 출연, 개발을 유도하여 '88년 말 현재 개발 완료 품목수가 1,014개, 개발 추진중의 과제가 353건에 이르는 상당한 실적을 가져오게 되었다.

가. 지원실적

-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86-'88)

구 분	고 시 품목수	개 발 완료 품목수	지원효과(백만원)		
			수입 대체	수출 증대	계
기계류 및 부품	1,394	622	987	299	1,286
전자전기기기및부품	742	318	522	665	1,187
소 재	227	74	233	95	328
계	2,363	1,014	1,742	1,059	2,801

-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연도	과제수	참 여 기업수	기술개발비(백만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계
'87	107	246	8,089	5,384	13,473
'88	246	565	17,667	14,703	32,370
계	353	811	25,756	20,087	45,843

• 다만 현행 지원제도는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시책의 경우 특정국가에 대한 수지 Balance 측면에서 과거 수입되고 있었던 것의 대체효과를 높이는 의미는 있으나 이미 생산되고 있는 외국제품을 단순 Copy하는 형태가 많아 기술축적의 효과가 크지 않고,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은 개발대상이 공통의 기술요소가 많은 기본적 분야로 인해 연구개발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개발효과가 크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으나 국산화 시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기존제품의 개발에 치우치고 있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음으로 해서 국제적으로 점차 강

화되고 있는 기술보호주의에 대비하고 장기적으로 국내 기술의 독자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외적으로, 새롭고 개량된 것이라고 인정된 특허, 또는 실용의 시작품을 개발코자 할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2. 등록현황 및 현재의 개발 여건

- 최근 특허, 실용의 출원이 '87현재 2만 8,500여건으로 연평균 18% 이상 신장하고 있고 등록의 경우 3,600여건으로 연평균 2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 반면 현재 특허, 실용을 상품화하기 위해 영세민, 개인,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지원중인 시작품 제작비 보조사업은 그 규모가 1억원 내외의 소규모로 연 25건 정도의 저조한 개발실적을 보이고 있고, 또한 기업이 개인소유 기술을 상품화할 경우도 Royalty, 개발비 부담이 과중할 뿐만 아니라 개발 성과나 개발후의 시장성이 불투명하여 개발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침체된 개발분위기의 결과로 이미 등록된 기술의 사장화는 물론이고 Idea 개발의욕의 저하와 기술의 해외의존도가 심화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정부에서는 현재 추진중에 있는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시책 및 공업기반기술 개발 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에 대해서도 연계 적용하여 지원토록 한 것이다.

3. 확대지원 내용

가.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화 지원

(1) 산업기술향상자금

- 용자대상 : 개인소유 또는 기업보유 기술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추가로 포함됨.

종전에는 대일수입 비중이 50% 이상이고 연간 수입규모가 크며 개발 파급효과가 높은 품목이 대상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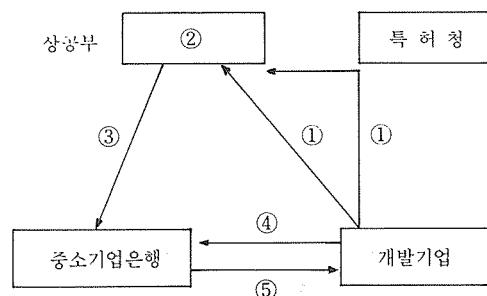
예) 기계류 및 소재 : 50만弗 이상
부 품 : 10만Fr 이상

- 자금조성 규모 : '89년 350억 원

- 용자조건

- 자금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금 리 : 연 5%
- 상환방법 :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담 보 등 : 100% 신용보증으로 용자 가능

- 용자절차



① 상공부 또는 특허청에 개발대상품목을 고시
요청 (양식 : 별표)

② 상공부에서 개발대상품목을 고시

③ 고시내용을 중소기업은행에 통보

④ 개발기업이 해당 중소기업은행에 자금 용자
를 신청

*자금신청 절차는 중소기업은행과 별도 협
의

⑤ 중소기업은행에서 자금사정 및 대출

(2) 공업발전기금

- 용자대상 : 산업기술향상자금 지원 대상과 동일

- 자금조성규모 : '89년 875억 (시작품 개발비 485
억)

- 용자조건

- 자금한도 : 업체당 2억 원 ('90년부터 지원규
모를 늘릴 계획임)

- 금 리 : 연 6.5%

- 상환방법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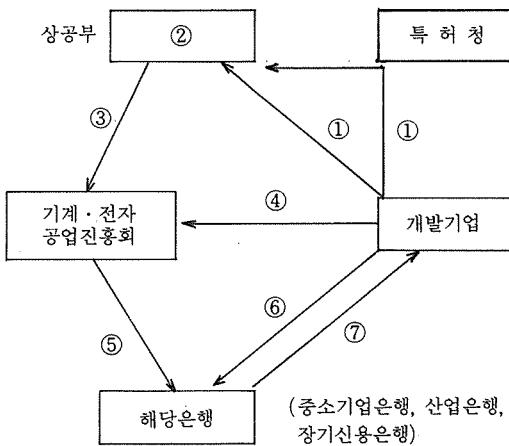
- 담 보 등 : 100% 신용보증으로 용자 가능

- 용자절차

①~② 산업기술향상자금 고시 신청과 동일

③ 고시내용을 전자·기계공업진흥회에 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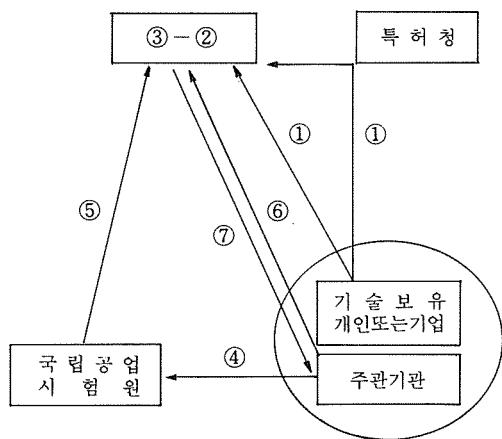
④ 개발기업이 전자·기계공업진흥회에 개발계
획서 제출



• 지원비율

① 1등급 : 소요개발사업비의 80%	출연 지원
② 2등급 : " 70%"	"
③ 3등급 : " 60%"	"
④ 4등급 : " 50%"	"
⑤ 5등급 : " 40%"	"

• 지원절차



* 주관기관 : 해당과제를 연구개발할 능력이 있는 연구기관으로 기술개발에 주도적으로 참여.

그 대상으로는,

국, 공립연구기관(예 : 국립공업시 협원)
특정연구기관(예 : 기계연구소, 한국과학기술원 등)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음.

- ① 상공부 또는 특허청에 공업기반기술 과제를 신청
- ② 기술수요조사 작업을 통해 중간, 최종보고서 작성(특허, 실용권의 개발일 경우 중간 또는 최종보고서를 등록된 명세서로 갈음)
- ③ 분야별 전문위원회(상공부)에서 보고서를 심의, 선별하여 고시
- ④ 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를 국립공업시 협원에 제출
- ⑤ 분야별 전문위원회(국립공업시 협원)에서 개발목표, 내용, 사업비의 타당성 등을 심의

- ⑤ 전자·기계 공업 진흥회 심의회의 심의 및 확정 결과를 해당은행에 통보
- ⑥ 개발기업이 해당은행에 자금융자를 신청
- ⑦ 담보 등 확인 및 대출

나.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 (현재 운영요령 등을 개정중임)

- 과제신청자격 : 특허, 실용, 기술보유 개인 또는 기업도 포함
* 종전에는 개인의 신청자격이 없음.
- 예산규모 : '89년 확보액 240억 원
- 정부출연 내용
- 지원등급

기술개발 수행 방법(기업 참여 형태)	지원등급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과제	1, 2
1개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과제	1, 2, 3
1개 중소기업과 1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과제	2, 3, 4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한 과제	3, 4, 5
1개 대기업(중견기업)이 단독으로 참여한 과제	4, 5

* 개인이 자기소유기술(특허 또는 실용)을 개발 코자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참여한 등급에 준하여 지원.

- ⑥ 전문위원회(상공부)의 최종심의 등을 거쳐
확정, 통보(필요시 수정 보완)
⑦ 상공부장관과 주관기관장이 협약서 체결

4. 맺음말

• 이번 특허, 실용의 시작품 개발 지원 시책에는 첫
째로 장기저리자금의 융자와 더불어 융자를 위한
고시 신청내용에 수입대체효과 등 경제성 판단 항

목이 생략되고, 둘째로 정부가 출연하는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에는 기술수요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
화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종
래보다 수월하게 공업소유권 기술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는데 그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지원방안의 결과로서 보다 광
범위한 국민적 창의력의 발굴로 향후 활발한 개발
사업의 추진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내 독자적인
기술발전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89 기계류 부품 소재 국산개발 대상 품목

기관명 :

HS	품목명	국 문 영 문	규격 및 용도 (등록번호, 등록일자)	개 발 기 간	'88수입실적		연 간 개 발 효과(천불)		개발예상 주소	본 사 장	전 화	본 사 장	수 요 업 체
					(천불)	대 일	수입대체	수 출					

(주) 공업소유권 개발의 경우는 { 계약서 첨부(기업이 개인보유공업소유권을 개발코자 할 경우)
HS, 수입실적, 수입대체난은 기재 불요